

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6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1월 2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정비 용어 중 일부가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되어 제명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, 이미 개정·공포된 조례를 삭제하고, 기준일 이후 제·개정된 사항을 추가 정비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정비 용어 중 일부가 일본식 한자어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”으로 수정함.
- 2019년에 이미 개정·공포된 3건의 조례를 삭제하고(안 제9조, 안 제22조, 안 제43조), 조문의 순서를 정비함(안 제1조부터 안 제53조까지 → 수정 후 안 제1조부터 안 제50조까지).
- 기준일 이후 제·개정된 6건의 조례를 추가함(수정 후 안 제51조부터 안 제56조까지).

- 오타를 수정하고 개정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13조, 안 제24조, 안 제34조 (수정 후 안 제12조, 안 제22조, 안 제32조)).

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”을 “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를 삭제하고, 안 제1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안 제20조까지로 한다.

안 제13조(수정 후 안 제12조) 중 “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”를 ““공휴일 기타공사”를 “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”로 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22조를 삭제하고, 안 제23조부터 안 제42조까지를 각각 안 제21조부터 안 제40조까지로 한다.

안 제24조(수정 후 안 제22조) 중 “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”를 ““기타수입”을 “그 밖의 수입”로 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34조(수정 후 안 제32조) 제목과 본문의 “서울특별시”를 각각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안 제43조를 삭제하고, 안 제44조부터 안 제53조까지를 각각 안 제41조부터 안 제50조까지로 한다.

안 제51조부터 안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안 제51조(「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7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안 제52조(「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안 제53조(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0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안 제54조(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안 제55조(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기타수입” 을 “그 밖의 수입” 으로 한다.

안 제56조(「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부의안건” 을 “회의에 부칠 안건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</u></p> <p>제1조 ~ 제8조 (생략)</p> <p><u>제9조(「서울특별시 공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0조 ~ 제12조 (생략)</p> <p><u>제13조(「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12조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</u></p> <p>제14조 ~ 제21조 (생략)</p> <p><u>제22조(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10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u> <u>제20조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</u></p> <p>제23조 (생략)</p>	<p><u>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</u></p> <p>제1조 ~ 제8조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제9조 ~ 제11조 (제정안 제10조부터 제정안 제12조까지와 같음)</p> <p><u>제12조(「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12조제4항 중 “공휴일 기타공사”를 “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”로 한다.</u></p> <p>제13조 ~ 제20조 (제정안 제14조부터 제정안 제21조까지와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제21조 (제정안 제23조와 같음)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4조(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</p> <p>제25조 ~ 제33조 (생략)</p> <p>제34조(「서울특별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<u>서울특별시</u>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6조제3항제2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4항 중 “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부의안건 등을”을 “회의일시, 장소,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”로 한다.</p> <p>제35조 ~ 제42조 (생략)</p> <p>제43조(「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5조제3항 및 제16조 본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</p> <p>제44조 ~ 제53조 (생략)</p>	<p>제22조(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수입”을 “그 밖의 수입”로 한다.</p> <p>제23조 ~ 제31조 (제정안 제25조부터 제정안 제33조까지와 같음)</p> <p>제32조(「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<u>서울특별시의회</u>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6조제3항제2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4항 중 “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부의안건 등을”을 “회의일시, 장소,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”로 한다.</p> <p>제33조 ~ 제40조 (제정안 제35조부터 제정안 제42조까지와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제41조 ~ 제50조 (제정안 제44조부터 제정안 제53조까지와 같음)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신설>	<p>제51조(「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0조제7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p>
<신설>	<p>제52조(「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6조제2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</p>
<신설>	<p>제53조(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제10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</p>
<신설>	<p>제54조(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6조제1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</p>
<신설>	<p>제55조(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기타수입”을 “그 밖의 수입”으로 한다.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56조(「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6조제4항 중 “부의안전” 을 “회의에 부칠 안전” 으로 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

제1조(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9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32조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3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와 제3항제2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각각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부의한” 을 “회의에 부친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의안건” 을 “회의에 부칠 안건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위원회에 부의하여야” 를 “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의를 받은” 을 “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” 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제6호 중 “제1호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1호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규정에 불구하고” 를 “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6항 중 “제4항까지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28조제5항, 제82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불구하고” 를 각각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33조제4항 중 “제3항까지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원도급, 하도급, 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” 를
“원도급, 하도급,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” 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
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제1항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기후변
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공휴일 기타공사” 를 “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” 로
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 및
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3호 중 “제2호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2호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14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개
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단서에 불구하고” 를 “단서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5조제3항, 제13조제3항 중 “제2항에 불구하고” 를 각각 “제2항에도 불구
하고” 로 한다.

제15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의2호 중 “본문규정에 불구하고” 를 “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39조제5항과 제7항, 제5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, 제7항, 제8항과 제5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, 제11항, 제12항, 제13항, 제15항, 제18항 중 “규정에 불구하고” 를 각각 “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5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본문에 불구하고” 를 각각 “본문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16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중 “제3호까지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18조(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제2항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2항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19조(「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20조(「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21조(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제2호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22조(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수입” 를 “그 밖의 수입” 로 한다.

제23조(「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제1항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24조(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2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각각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25조(「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6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26조(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

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27조(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0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28조(「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29조(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규정에 불구하고” 를 “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30조(「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31조(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제2호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2호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규정에 불구하고” 를 “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9호마목 중 “나목에 불구하고” 를 “나목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6호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6호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32조(「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부의안건 등을” 을 “회의일시, 장소, 회의에 부칠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” 로 한다.

제33조(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34조(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8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하고, 제11조제3항 중 “부의사항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 사항” 으로 한다.

제35조(「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, 제24조 본문 중 “규정에 불구하고” 를 각각 “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36조(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37조(「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38조(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본문에 불구하고” 를 “본문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39조(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40조(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5조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41조(「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신청순위에 불구하고” 를 “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42조(「서울특별시 청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
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4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43조(「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44조(「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45조(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, 제27조제2항 중 “규정에 불구하고” 를 각각 “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35조제4항 중 “제3항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3항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46조(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및 제12조제3항 중 “당해” 를 각각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11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47조(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6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48조(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49조(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불구하고” 를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50조(「서울특별시민상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규정에 불구하고” 를 “규정에도 불구하고” 로 한다.

제51조(「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7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52조(「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53조(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0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54조(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

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55조(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기타수입” 을 “그 밖의 수입” 으로 한다.

제56조(「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부의안건” 을 “회의에 부칠 안건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